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

■ 석 지 응*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주식회사의 최고이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권행사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금융시장이 발달되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유동이 매우 빈번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들이 실제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모두가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주주분산이 고도화되어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을 새도보팅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왔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새도보팅제도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 불성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주주총회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정착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의결권 행사의 증가는 새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의결정족수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주총회를 왜곡시키는 새도보팅제도를 폐지하면 주주의 의결권행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제도가 안착되면 향후에는 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노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시간적·장소적 제약도 없는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의결권행사 방법 효율성·편의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지원부 대리, jasonseok@gmail.com

* 본 논문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의견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 2
II.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문제점 / 3
1. 주주총회의 의의 / 3
2. 주주총회의 현황 및 문제점 / 4
III.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 6
1. 의 의 / 6
2. 직접행사방식 / 6
3. 간접행사방식 / 8
IV.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국내외 비교 / 12
1. 서 / 12
2. 전자투표제도 / 12
3. 전자위임장제도 / 17
V.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활성화 방안 / 19
1.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 19
2. 전자주주총회(버추얼주주총회) 도입 / 20
3. 새도보팅제도의 폐지 / 21
4. 국내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 / 22
VI. 결 론 / 23

I.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주식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

서 주주 의결권행사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어나 감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합병 등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근래에 들어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금융시장이 발달되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유통이 매우 빈번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게는 수만명이 넘게 되었고,¹⁾ 주주들이 실제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모두가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주 분산이 고도화되어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을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행사하는 “새도보팅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왔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새도보팅제도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 불성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

1)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3. 9), “1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투자자(실질주주) 현황”에 따르면 실질주주가 가장 많은 상장법인은 그 수가 25만명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11845호, 2013.5.28.>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적 의결권행사 활성화, 의결정족수의 완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강화, 의결권자 문서서비스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방안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의결권행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상장법인에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도 발의되었다.³⁾ 전자적 의결권행사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전자적 의결권행사제도 수행을 위한 인프라는 예탁결제원을 의하여 구축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 의결권행사 제도와 외국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전자적 의결권행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문제점

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합병, 해산 등과 같은 중요사항에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
 - ② 제314조제4항·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
-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5, 2016.7.4.),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안 제542조의14신설).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⁴⁾ 이러한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결산을 위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진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만능기관은 아니고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⁵⁾ 주주총회에서는 결의방법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는 결의이고(상법 제368조제1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는 결의를 말한다(상법 제434조). 특수결의는 총주주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한다(상법 제400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며, 이사회 등 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현황 및 문제점

상장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개년간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횟수는 총 8,874회로 나타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는 “3월 21일~31일 사이”(7,041회, 79.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월 11일~20일 사이”(1,578회, 17.8%)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1〉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현황

(단위: 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2/11~20	1	1	1	1	1	5	0.1
2/21~29	15	17	13	10	8	63	0.7
3/01~10	42	31	19	11	19	122	1.4

4) 임재연(2014), 「회사법 II(개정2판)」, 박영사, 10면.

5) 최준선(2011), 「회사법 제6판」, 삼영사, 304~305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3/11~20	236	192	210	528	412	1,578	17.8
3/21~31	1,371	1,414	1,488	1,255	1,513	7,041	79.3
기 타	18	11	9	15	12	65	0.7
합 계	1,683	1,666	1,740	1,820	1,965	8,874	100.0

출처: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5. 3),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정기주주총회 개최 요일은 금요일(6,270회, 70.7%)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목요일(822회, 9.3%)순으로 집중 개최되었다. 주주총회 개최일의 집중화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장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표 2> 최근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 요일 현황

(단위: 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월요일	72	64	140	158	155	589	6.6
화요일	94	57	44	179	205	579	6.5
수요일	116	77	66	49	296	604	6.8
목요일	199	207	186	133	97	822	9.3
금요일	1,200	1,255	1,303	1,300	1,212	6,270	70.7
토요일	2	5	1	1	-	9	0.1
일요일	-	1	-	-	-	1	0.0
합 계	1,683	1,666	1,740	1,820	1,965	8,874	100.0

출처: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5. 3),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Ⅲ.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1. 의 의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주주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⁶⁾ 의결권행사의 유형은 그 행사방식에 따라 직접행사방식과 간접행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행사방식에는 ① 주주 의결권 직접행사(상법 제368조제1항),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이하 ‘서면투표’라 한다)(상법 제368조의3),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상법 제368조의4)가 있다. 간접행사방식에는 ① 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제368조제3항), ②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의한 행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2조), ③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자본시장법 제314조 제1항 및 제5항)가 있다. 각각의 행사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2. 직접행사방식

(1) 주주 의결권 직접행사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만으로 주주로 인정됨으로 직접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본인 확인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⁷⁾ 이는 가장 고유의 기본적인 주주의 의결권행사 방식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주주의 의사를 직접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중에 회사의 경영진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⁸⁾

6) 임재연(2014), 앞의 책, 64면.

7) 최준선(2011), 앞의 책, 324면.

8) 임재연(2014), 앞의 책, 65면.

(2)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투표)

1999년 12월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상법 제368조의3제1항).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로 하여금 의안에 대한 판단 정보와 의안별 찬성·반대 및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소집통지서에 첨부한 서면에 의안별 찬반여부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한 효과가 발생하며, 그 주식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에 불구하고 서면투표제도의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회사 및 주주의 관심이 적어 그 이용률은 높지 않다.¹⁰⁾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전자투표)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전자투표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서면투표를 하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개최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9) 임재연(2014), 앞의 책, 89면.

10) 코스닥협회 보도자료(2016),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면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코스닥상장법인은 '16. 5월 기준 115사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11) 정경영(2004),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 제44호, 한국상사법학회, 2~3면.

3. 간접행사방식

(1)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의결권이란 일신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대리인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제2항).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자신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으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¹²⁾

(2)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의한 행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¹³⁾ 주식회사의 대형화와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왔으며, 규모가 큰 회사의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위하여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누군가가 대신 행사해야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해졌다.¹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면 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③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2조제2항).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12) 최준선(2011), 앞의 책, 325면.

13) 임재연(2014), 「자본시장법(2014년판)」, 박영사, 573면.

14) 위의 책, 같은 면.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¹⁵⁾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방법도 전자화가 되고 있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3)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¹⁶⁾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는 실질주주가 예탁자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권리행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314조제1항,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0조).¹⁷⁾¹⁸⁾ 실질주주가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동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권리의 종류는 ① 의결권행사, ② 회사의 자본금 변동 시 권리행사, ③ 배당시 권리행사, ④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⑤ 명의개서 실기주에 대한 권리행사 등이 있다.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그동안 주주의 관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그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⁹⁾ 이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활성화되었고, 회사는

1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16)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자본시장법 제315조제1항)

17) 자본시장법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18)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0조(권리행사의 방법) 법 제314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4) 회사의 요청에 의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새도보팅)

주식의 분산이 고도화된 대규모 상장법인은 소액주주의 무관심에 따른 주주총회 불참석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 등 주주총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12월 구(舊)증권거래법에 도입된 새도보팅제도는 실질 주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²⁰⁾²¹⁾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에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14조제4항).

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찬·반 비율에 따른 의결권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적인 제도

19) Paul Rose (2007), “The Corporate Governance Industry”, 32 J. Corp. L. 887, 892~898면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등의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방향 자문기관 등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Thomas W. Briggs (2007),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New Hedge Fund Activism: An Empirical Analysis”, 332 J. Corp. L. 681, 692면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기관을 활용하여 비용 등은 절감할 수 있으나 소수의 자문기관에 독점에 따른 이행상 충발생을 우려한다.

20) 자본시장법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예탁결제원은 ① 회사가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실질주주에게 함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가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③ 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사항이 회사의 존립이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주식교환·주식이전·영업의 양수·양도·임대·자본감소·해산·회사의 계속·합병·분할·분할합병 결의 및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④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새도보팅)할 수 없다.

이다.²²⁾²³⁾ 이러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은 직접 행사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의결권행사는 예탁결제원 명의로 행사하게 됨으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감사선임인 경우, 상법 제40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²⁴⁾

〈표 3〉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새도보팅 요청 현황

(단위: 사, %)

결산 연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합 계	
	요청법인	전년대비	요청법인	전년대비	요청법인	전년대비	요청법인	전년대비
2013	246	15.5	426	12.7	-	-	672	13.7
2014	105	△57.3	207	△51.4	-	-	312	△53.6
2015	146	39.0	309	49.3	2	-	457	46.5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4. 28), '1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새도보팅 현황.

22) 한국예탁결제원(2013), 「증권예탁결제제도(전정3판)」, 박영사, 145면.

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17조(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국내실질주주(법 제315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에서 외국인인 주주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예탁 주식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로서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요청한 주식수로 한다. 다만, 발행인이 요청한 주식수가 국내실질주주의 예탁 주식수에서 국내실질주주가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뜻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의사표시”라 한다)를 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탁 주식수에서 의사표시를 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대리인은 해당 주주총회 종료 후에 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4) 한국예탁결제원(2013), 앞의 책, 165면.

IV.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국내외 비교

1. 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주주총회는 주주 분산의 고도화와 개최시기의 집중화라는 현상이 겹치면서 정상적으로 주총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채워주던 세대보팅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더욱 주주총회 불성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주주의 의결권행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결권행사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도입이 되어있고, 다만 그 활용이 지금까지는 활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중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도입된 전자적인 방법의 의결권행사제도에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겠다

2. 전자투표제도

(1)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는 2009년 상법개정²⁵⁾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총회 개최비용도 절감된다.²⁶⁾ 많은 회사들이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주주들은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총회가 일부주주의 의사만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투자자 등의 활발한 의결권 행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

25)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6) 최준선(2011), 앞의 책, 332면.

택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제1항).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상법 제38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려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²⁷⁾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그리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전자투표업무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 확인 등을 위한 공인전자서명 등의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회사가 유리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별도의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상법 제368조의4제5항).

27)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표 4〉 전자투표 시스템(K-evote) 이용절차

절차	구분	내용
① 전자투표 채택	회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계약 체결
② 전자투표 신청	회사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 의안, 참고자료 등을 등록
③ 전자투표 행사안내	회사	주총소집 통지시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안내 (이용절차, 참고자료 등)
④ 전자투표 행사	주주	주총일 10일전부터 직전일 사이 'K-evote' 사이트에 접속, 의안 및 참고자료 조회 후 의결권 행사(※ 공인인증서 필요)
⑤ 주주총회 개최	회사	주총일에 전자투표 의결권수를 주주총회 의결권수에 산입·집계(주)
⑥ 전자투표 행사 기록 비치 보존	회사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기록을 3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

출처: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0. 8. 24), “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 개통”.

전자투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6년 3월 기준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총 487사로 나타났다. 이용회사 487사 중 460사가 새도보팅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회사가 새도보팅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현황

(단위: 건, 사)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기타	전체
'15년 3월	건수	116	220	2	338
	이용사	116	220	2	338*
'16년 3월	건수	158(36% ↑)	336(53% ↑)	5(150% ↑)	499(48% ↑)
	이용사	155(34% ↑)	328(49% ↑)	4(100% ↑)	487(44% ↑)

출처: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4. 25),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또한 '16년 3월 기준 주주의 행사율을 살펴보면 주식수 기준 1.44%, 주주수 기준 0.22%로 나타난다. 실제로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한 행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표 6〉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 현황

(단위: %)

구 분	행사주식 수 기준	행사주주 수 기준
'15년 3월	1.62	0.24
'16년 3월	1.44	0.22

출처: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4. 25),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2) 미국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개정모범사업회사법은 많은 주에서 채택하여 주별 회사법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개정모범사업회사법은 주주총회 전자적 소집통지를 인정하고 전자적 대리인 선임의 통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²⁸⁾ 하지만 개별 주에서는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델라웨어주가 대표적이다.²⁹⁾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28) 김병태(2013),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영산법률논총」 제10권 제2호 통권 제 18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47면.

29) [Delaware Code Title 8 – Corporations] § 211 Meetings of stockholders.

(a)(1) Meetings of stockholders may be held at such place, either within or without this State as may be designated by or in the manner provided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bylaws, or if not so designated,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f, pursuant to this paragraph or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the bylaws of the corporation, the board of directors is authorized to determine the place of a meeting of stockholde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in its sole discretion, determine that the meeting shall not be held at any place, but may instead be held solely by means of remote communication as authorized by paragraph(a)(2) of this section.

(2) If authoriz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its sole discretion, and subject to such guidelines and procedures as the board of directors may adopt, stockholders and proxyholders not physically present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may, by means of remote communication:
a. Participate in a meeting of stockholders; and b. Be deemed present in person and vote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whether such meeting is to be held at a designated place or solely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³⁰⁾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전자투표를 규정하면서 주주총회의 출석을 전제하는데 주주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하면 주주총회의 출석으로 간주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³¹⁾ 전자투표의 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자투표를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동일하게 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자투표의 시한은 주주총회에서 각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시점까지라고 볼 수 있다.³²⁾ 미국의 전자투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개최된 주주총회 중 3,390건의 주주총회에서 Broadridge사의 전자투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고 한다.³³⁾

(3) 일본

일본은 2001년 11월 주주총회 등 회사운영의 전자화 추진방안으로서 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2년 4월 1일부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의결권행사 등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일본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운영의 전자화를 지향하며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by means of remote communication, provided that (i) the corporation shall implement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at each person deemed present and permitted to vote at the meeting by means of remote communication is a stockholder or proxyholder, (ii) the corporation shall implement reasonable measures to provide such stockholders and proxyholder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to vote on matters submitted to the stockholders, including an opportunity to read or hear the proceedings of the meeting substantially concurrently with such proceedings, and (iii) if any stockholder or proxyholder votes or takes other action at the meeting by means of remote communication, a record of such vote or other action shall be maintained by the corporation.

30) 김병태(2013), 앞의 논문, 47면.

31) 정경영(2004), 앞의 논문, 108면.

32) 위의 논문, 109면.

33) 이민형(2014), “주요국의 전자투표제 활용 현황과 국내 입법 동향”, 「CGS Report」 4권 10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4면.

34) 김성문(2010),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3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48면.

것이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주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고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³⁵⁾ 일본은 전자투표제도를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보기 때문에 주주는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 서면투표시의 서면 등을 회사에 전자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³⁶⁾

또한 주주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리투표와 서면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의 원칙 1-2의 보충원칙④에서 “상장법인은 자사의 주주인 기관투자자나 해외투자자의 비율 등에도 입각하여 의결권의 전자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환경조성(의결권 전자행사 플랫폼의 이용)이나 소집통지의 영문번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⁷⁾ 일본의 전자투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5월 기준 동경증권거래소 상장법인 3,426사 중 16.5%에 해당하는 462사가 일본 전자투표 운영기관인 Investor Communication Japan의 전자투표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⁸⁾

3. 전자위임장제도

(1) 우리나라

본래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은 ①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②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③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³⁹⁾, ④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으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201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전자적인 방법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

35) 정경영(2004), 앞의 논문, 113면.

36) 岩村充/神田秀樹編(2003), 「電子株主總會の研究」, 弘文堂, 14면, 정경영(2004), 앞의 논문, 101면에서 재인용.

37)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2015),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61면 및 96면.

38) 이민형(2014), 앞의 논문, 14면.

39) 주주가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개별 회사 또는 개별 위임장 권유자가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 역할과 함께 전자위임장권유 관리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자위임장권유 이용현황(앞의 <표 4> 참고)을 살펴보면 16년 3월 기준 전자위임장 권유를 이용한 회사는 총 487사이다. 이 또한 회사가 새도보팅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위임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16년 3월 기준 주주의 행사율을 살펴보면 주식수 기준 0.15%, 주주수 기준 0.002%로 나타난다. 새도보팅제도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나 현재 주주들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표 7> 전자위임장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 현황

(단위: %)

구 분	행사주식 수 기준	행사주주 수 기준
'15년 3월	0.14	0.003
'16년 3월	0.15	0.002

출처: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6. 4. 25),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2) 미국

우리나라에는 새도보팅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의결정족수의 확보를 위한 위임장행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본래부터 위임장권유제도를 통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했고, 이렇게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우편송부를 하는 경우 위임장용지와 그 참고서류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과 노력이 크게 발생하였다.⁴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e-Proxy Rules」에 따르면 회사는 SEC의 EDGAR가 아닌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위임장 권유에 관한

40) 장영수(2015),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 16권 제2호, 증권법학회, 182면.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고,⁴¹⁾ (1) “notice only option”과 (2) “full set delivery optio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⁴²⁾ option(1)에 따르면 위임장 관련 참고서류의 송부 없이 통지만 하게 됨으로 주주총회 40일 이전에 그에 관해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option(2)에 따르면 웹사이트 게시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장 관련 참고서류를 주주들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40일의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⁴³⁾ 미국의 전자위임장 현황을 살펴보면 「e-Proxy Rules」이 시행되기 전 전자위임장을 채택한 회사는 653사(2008년 상반기 기준)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e-Proxy Rules」 시행 후에는 1,601사(2009년말 기준)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⁴⁴⁾

V.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활성화 방안

1.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최근 들어 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무화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업민주주의에 반하며, 주주총회의 질적인 저하 우려, 주주총회 참여 증가의 불확실성, 정보통신기술의 보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주들은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의결권행사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혹은 주주가 관심이 있어도 시간적·장소적 제약

41) SEC, 「e-Proxy Rules」 II, “Under the amendments, an issuer that is required to furnish proxy materials to shareholders under the Commission’s proxy rules must post its proxy materials on a specified, publicly-accessible Internet Web site(other than the Commission’s EDGAR Web site) and provide record holders with a notice informing them that the materials are available and explaining how to access those materials”.

42) SEC, 「e-Proxy Rules」 II-A “The notice and access model allows an issuer to select either of the following two options to provide proxy materials to shareholders: (1) the “notice only option” and (2) the “full set delivery option””.

43) 김화진(2015),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70면에 따르면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 참고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가능하다고 한다.

44) 위의 연구용역보고서, 71면.

으로 인해 주주총회 참석이 쉽지 않고,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특정일, 특정시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도보팅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주주총회에서 새도보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실제 주주들의 이용실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이는 주주의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매년 채택하기 때문에 매년 다른 방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로서는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크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주주수가 많은 회사는 전자투표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수는 각각 1천명과 1만명이 기준이다.⁴⁶⁾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도입 시 회사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실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⁴⁷⁾ 많은 개인주주들이 이미 온라인주식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접하면서 공인전자서명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자투표시스템에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총회 형식화 및 의결정족수부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전자주주총회(버추얼주주총회) 도입

전자주주총회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이다. 협의의 전자주주총회(이하 “버추얼주주총회”라 한다)란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자체가 가상공간에서 개최되어 주주가 전자적 방식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광의의 전자주주총회(이하 “인터넷주주총회”라 한다)는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

45) 앞의 <표 5> 및 <표 6> 참고.

46) 김화진(2015),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96면.

47) 김순석(2014),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28(4), 한국기업법학회, 226면.

라 일부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⁴⁸⁾⁴⁹⁾ 현재 우리나라는 소집절차와 의결권행사는 전자화까지는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 “주주총회의 참여와 의사진행단계”, “전자주주총회 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⁵⁰⁾ 전자주주총회가 도입이 된다면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주주 의결권행사의 시간적·장소적 제약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회사법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원격통신수단만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많으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법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본다.⁵¹⁾

3. 새도보팅제도의 폐지

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새도보팅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본래 새도보팅제도는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그 폐지가 예정되었으나, 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주총회 사무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제도 폐지 직전 2014년 12월 30일 자본시장법 개정⁵²⁾을 통해 전자

48) 김재두(2013),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연구”, 『경영법률』 제23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25면.

49) 김순석(2017),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5면에서 협의의 전자주주총회 형태를 “비채널주주총회”, 광의의 전자주주총회 형태를 “온라인주주총회”로 분류한다.

50) 김재두(2013), “앞의 논문”, 227~228면.

51) 김화진(2015),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110~116면.

52) 자본시장법 부칙 제11855호 개정을 통해 § 18 신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 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

투표 및 전자위임장 채택 회사에 한하여 그 제도의 존속을 3년간 연장하였다. 하지만 동제도는 주주총회 불성립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제도임에 불구하고 회사의 손쉬운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변질이 되면서 현재는 주주의 의사를 왜곡하고 주주총회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실질주주에 대해서만 주주가 아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편의적이라는 지적과, 실질주주가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기권’의 의사표시일 수 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새도보팅을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결과가 달라지면서 전체 주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있다.⁵³⁾ 새도보팅은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조건부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도보팅제도를 유예 중이나 이 또한 새도보팅 폐지의 단계적 진행이라고 판단된다.

4. 국내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방식은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것과 회사의 신청에 의한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행사 내역 취합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외국인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예탁자(증권회사 등)를 통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주주의 의

회 목적사항

② 제314조제4항·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3) 박철영(2013), “새도보팅(Shadow Voting)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BFL」 제6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9면.

결권행사 요청이 확대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국내 실질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소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증권회사 대신하여 하거나 재량적으로 행사하는 “재량적 의결권행사제도(Discretionary Voting)”가 존재하는데,⁵⁴⁾ 우리나라에도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하여 그 내역의 취합을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의결권행사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 예탁결제원이 일괄적으로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다면 보다 많은 실질주주들의 의결권이 주주총회에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⁵⁵⁾

Ⅵ. 결 론

상장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들의 결산월이 대부분 12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집중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단기차익 추구와 회사의 경영에 대한 무관심도 주주총회의 형식화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주주총회에 관심이 있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개최시기가 집중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의결권행사제도는 주주총회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준다.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정착되면 더 많은 소액주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의결권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의결권 행사의 증가는 2018년 새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의결정족수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주총회를 왜곡시키는 새도보팅제도를 폐지하면 주주의 의결권행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가 안착되면

54) 김화진(2015),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84~85면.

55) 전자투표제도가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무화 비대상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시간적·장소적 제약도 없는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의결권행사 방법 효율성·편의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 임재연 (2014), 「자본시장법(2014년판)」, 박영사.
- _____ (2014), 「회사법Ⅱ, 개정2판」, 박영사.
- 최준선 (2011), 「회사법(제6판)」, 삼영사.
- 한국예탁결제원 (2013), 「증권예탁결제제도(전정3판)」, 박영사.
- 김순석 (2017),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 _____ (2016),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28(4), 한국기업법학회.
- 김화진 (201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영수 (2015),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증권법학회
- 이민형 (2014), “주요국의 전자투표제 활용 현황과 국내 입법 동향”, 「CGS Report」, 4권 10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박철영 (2013), “새도보팅(Shadow Voting)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BFL」 제6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병태 (2013),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영산법률논총」 제10권 제2호 통권 제18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김재두 (2013),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연구”, 「경영법률」 제23집 제2호, 한국 경영법률학회.
- 김성문 (2010),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3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경영 (2004),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 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 제44호, 한국상사법학회.
- 岩村充/神田秀樹編(2003), 「電子株主總會の研究」, 弘文堂.
- Paul Rose (2007). “The Corporate Governance Industry”, 32 J. Corp. L. 887, Delaware Law School of Widener University.
- Thomas W. Briggs (2007).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New Hedge Fund Activism: An Empirical Analysis”, 332 J. Corp. L. 681, Delaware Law School of Widener University.

참고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16. 5. 3),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 _____ (2016. 4. 28), “’1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새도보팅 현황”.
- _____ (2016. 3. 23), “12월 결산법인 정기 주총에서 전자투표 이용사”.
- 코스닥협회 보도자료 (2016),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 분석결과”.